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사료공업(주) 컴퓨터 제어공이 상병명 “1)세균성 뇌막염, 2)뇌염(의증), 3)흡인성 폐렴, 4)무기폐, 5)위궤양, 6)하반신 마비 · 척수염”이 발생한 경우

(91-1호 91. 1. 21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원처분청 :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김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대리인

성명 : 김○○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피재근로자

성명 : 김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소속 : ○○사료공업 주식회사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의 재심사청구취지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7. 24.자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피재자는 ○○사료공업(주)에 1989. 11. 1. 입사하여 생산직에 근무하던 중 1990. 2. 23. 분진이 많은 작업장의 작업환경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병명 “1)세균성 뇌막염, 2)뇌염(의증), 3)흡인성 폐렴, 4)무기폐, 5)위궤양, 6)하반신 마비 · 척수염”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

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요구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0. 12. 19.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90. 12. 24.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90. 11. 21. 심사관 : 김○○)
4. 업무상 질환 여부 감정서 사본(1990. 11. 9. 한강성심병원의과학크리닉 의사 길○○)
5. 진단서 사본(1990. 2. 28. 여의도성모병원)
6. 요양신청서 사본(1989. 7. 16. 김○○)
7.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90. 7. 24.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8. 진단서 사본(1990. 5. 4. 여의도성모병원)
9. 진술조서 사본(1990. 9. 17. 심○○)
10. 작업환경측정결과 사본(1990. 1. 8.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
11. 시험성적서 사본(1990. 11. 8. 한국식품연구소)
12.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0. 11. 14. 김○○)
13. 진료확인서 사본(1990. 8. 24. 남서울의원)
14. 진단서 사본(1990. 8. 24. 신갈을지병원)
15. 확인서 사본(1990. 10. 29, 1990. 10. 31. 심○○)
1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사료공업(주) 소속 컴퓨터 제어공으로서 1989. 11. 1. 입사하여 생산직에 근무해 오던 중 1990. 2. 23. 작업장인 싸이로에 분진 및 세균 등으로 인하여 상병명 “1) 세균성 뇌막염, 2)뇌염(의증), 3)흡인성 폐렴, 4)무기폐, 5)위궤양, 6)하반신 마비 · 척수염”이 발

병하게 되어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피재자가 컴퓨터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상병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무장소인 싸이로에 저장되어 있는 곡물에 대하여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한 세균검사 시험성적서상 소맥피에서 1그램당 930억마리, 옥수수 1그램당 700억마리, 싸이로 분진 1그램당 190만마리, 지하실 분진 1그램당 190억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로 보아도 작업환경에 의해 감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재자는 컴퓨터 제어공으로 싸이로통 내부에서 원료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한 사실을 생산과장 심○○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소견은 “뇌막염 및 척수병증으로 1990. 2. 24.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인 자로서 뇌막염의 원인이 될만한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 등의 소견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및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뇌막염, 척수병, 폐렴 등은 본 환자와 같이 컴퓨터 제어실 등에서 근무하는 일상사무직 종사하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임”이고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뇌막염, 척수병 등은 감염에 의한 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며 한림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센터의 업무상 질환여부에 대한 감정소견은 “공기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며 사람은 원래 많은 세균이 상기도에 상주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때로는 감염성 폐렴, 부비감염, 중이염 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감염증이 원인이 되어 뇌막염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피감정인이 폭로되고 있는 분진에 많은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뇌막염을 일으키지 않음. 고로 피감정인의 분진작업과 뇌막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질병자의 뇌막염은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음.”으로 이상의 각종 자료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의 상병명인 뇌막

염 및 척수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될 뿐으로 주치의의 추정소견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기업(주) 생산출하직 근로자가 제품창고에서 근무중 상병명 “제3-4 및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91-85호 91. 5. 20 취소)

##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이○○

주소: 인천직할시 북구 부개1동  
원처분청: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상 동

주소: ✕

대리인

성명: 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 상 동

주소: ✕

소속: ○○기업 주식회사

## 주 문

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이 1990. 8. 1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청구취지는 인천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8. 1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생산출하직으로서 1987. 12. 21. 입사하여 회사제품 창고에서 적재된 생산제품을 손으로 들어 상차작업을 하여 오던 중 약 1년 6개월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1990. 6. 23. 작업중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평화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제3-4 및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재해사실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요구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2. 19. 이○○)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2. 23.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90. 12. 20. 김○○)
4. 요양신청서 사본(1990. 7. 2. 이○○)
5.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90. 8. 18. 인천북부 지방노동사무소장)
6.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0. 8. 17. 7급 조○ ○)
7.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0. 12. 19. 김인)
8. 진술조서 사본(1990. 7. 이○○, 박○○)
9. 목격자 진술서 사본(1990. 12. 12. 최○○, 김○○)
10. 출·퇴근 카드 사본(1990. 3-6월 이○○ 분)
11. 작업실태서 사본(1990. 12. 이○○)
12. 제품규격별 입·출고 일보 사본(1990. 6. 23. ○○기업(주))
13.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전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생산출하직으로서 1987. 12. 21. 입사하여 제품 상차작업을 하여 오던 중 가끔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2-3일 지나면 통증이 없어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90. 6. 23. 작업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평화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제3-4 및 제4-5 요추추간판핵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재해원인이 불분명하고 직업성 질병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게 약 3kg 정도의 제품상자를 한번에 10-16상자(무게 30kg-50kg)씩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어 차량에 적재하는 일을 하루 평균 500-2,000상자씩 처리하는 작업을 하여 오던 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 작업내용 및 발병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형광램프 제조기업인 ○○기업(주)의 출하담당 사원으로서 1987. 12. 21. 입사하여 사내 제품창고에서 생산된 제품상자를 손으로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여 왔고 동 제품상자는 길이 120cm로 상자당

3kg 정도의 무게이고, 한번에 10-16상자씩 운반하게 되므로 30-50kg의 무게가 되며, 하루에 통상 500-2,000상자를 운반, 상차하여 오다가 입사 1년 후부터 가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으나 2-3일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근무를 계속하였고, 1990. 6. 23. 작업중 허리에 격심한 통증을 느껴, 평화의원에서 진단한 결과 상병명 “제3-4 및 제4-5 요추추간판핵탈출증”이 진단된 사실이 요양신청서, 최○○, 김○○의 목격자 진술서, 이○○, 박○○의 진술조서, 재해조사 복명서, 작업실태서, 제품규격별 입·출고일보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근무중 허리부상 사실이 없으므로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할수 없음”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1990. 6. 25.자 C/T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음”이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소견이 “1991. 4. 11. 진찰소견상 요추하부에 압통 이외에는 근력 감각건반사에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고, 평면 방사선상 이상 소견 없으나 전산화 단층촬영과 척수 조영술상 “제4-5 요추추간판핵탈출증”的 경도의 소견을 보임, 검진과 근전도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제4-5 요추추간판경도의 탈출”로 진단할수 있음”인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근무내용이 30-50kg의 제품상자를 하루 500-2,000개씩 운반하는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허리에 의존하는 작업이고 입사후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왔으나 계속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상병을 유발할만한 돌발적인 재해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오는 동안 동 업무가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